##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2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임이자・구자근・정희용

김종양 · 김형동 · 한지아

조지연 • 유용원 • 강대식

박충권 · 신성범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상현상에"를 "기상현상과 이상기후·극한기후에"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각각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의2. "이상기후"란 「기후・기
	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u>&lt;신 설&gt;</u>	1.의3. "극한기후"란 기온·강
	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
	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
	러 사회 · 경제에 해로운 결과
	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는 현상을 말한다.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등) ①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	
정·조사하고 <u>기상현상에</u> 대한	기상현상과 이상기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	<u>후·극한기후에</u>
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	
시 ·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	기후위기감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u>기상</u> 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 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 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u>기상정보관리</u> <u>체계</u>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 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시예즉관리체계</u>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후</u>
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④기후위기감시
예측관리체계